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의안 번호	63

제출년월일 : 2026. 8. 26.
제 출 자 : 창 원 시 장

1. 제안이유

○ 『마창대교』는 경남 서부권과 창원, 김해, 부산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의 핵심 시설로 경남지역 물류 이동의 중심 기능과, 창원 시내를 통과할 때보다 약 7㎞의 거리 단축 및 30분의 시간 단축 효과로 기존 도심지 교통혼잡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는 도로로서,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사업시행자인 ㈜마창대교가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08년 7월 마창대교 개통 이후 'km당 단위요금'이 국내 유료도로 중 가장 비싼 도로라는 오명을 받고 있으며, 이용자 부담 경감,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로 이용자 및 지역 상공업계 등에서 지속적인 통행료 인하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마창대교의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에서 **'22년 통행료 인상분(500원 인하)을 동결**하고, **주중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32% 할인(800원 인하)**하는 통행료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에서 통행료 할인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우리 시에 지원요청 하였음.

○ 마창대교(민간투자사업)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의 ‘마창대교 통행료 할인 정책’에 우리 시 재정을 지원하는 사항은「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8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시의회 의결(동의)을 받고자 함.

2. 그간 추진사항

○ 마산~진해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기본설계(건설교통부) : ’96. 12. 30.

○ 마창대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03. 5. 13.

○ 마창대교 기공식(공사착공 2004. 4. 15) : ’03. 8. 27.

○ 준공 및 개통 : ’08. 7. 1.

○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변경실시협약 체결 : ’17. 1. 26.

* 최소수입보장(MRG))→수입분할관리

○ 통행료 인하 재정분담 협의(경남도-창원시) : ’22. 8. ~ ’23. 4.

○ 출·퇴근 시간 할인 정책에 따른 市재정지원 : ’23. 7. ~ ’26. 6.

- (할인율) 20%, (재정 분담률) 道 37% : 市 63%

○ 출·퇴근 시간 추가 할인(20%→32%) 정책 市재정지원 협의 : ’26. 6. ~ 7.

- (할인율) 32%, (재정 분담률) 道 50% : 市 50% (13%↓ 하향 조정)

○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추진방안(시장 결재) : ’26. 7. 9.

○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시→도) : ’26. 7. 10.

3. 마창대교 통행료 할인 정책 개요(경상남도)

○ **(협약통행료)**

구 분	기준통행료(불변가)	2017년~2021년	2022년~2029년	2030년~2038년
소 형	**2,000원**	**2,500원**	**3,000원**	**3,500원**
중 형	2,500원	3,100원	3,800원	4,400원
대 형	3,000원	3,800원	4,500원	5,300원
특대형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 **(통행료 동결)** ‘22년 통행료 인상분(소형차 기준 500원 인상) 동결

- 현행 통행료 동결 (소형 2,500원, 중형 3,100원, 대형 3,800원, 특대형 5,000원)

○ **(출퇴근 시간 32% 할인)** 평일 출·퇴근 시간 요금 할인

- 할인시간 : 주중(월~금), 07 ~ 09시, 17시 ~ 19시(4시간)
- 할 인 율 : 통행료의 32%(소형차 기준 800원 할인)
- 대상차종 : 전차종
- 출퇴근 시간 통행료 (소형 1,700원, 중형 2,200원, 대형 2,700원, 특대형 3,500원)

○ **(재정 소요액)** 연간 115억원(2025년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재정 소요액			비고
	합 계	통행료 동결 보전	출·퇴근 할인 보전	
2025년	115억원	87억원	28억원	

*2022년 통행료 동결 보전 87억 道전액부담 + 출·퇴근 할인 28억 道·市분담 (市 지원액 11억원)

4. 우리시 재정지원 사항

○ ‘출퇴근 32% 할인’ 비용 중 50% 지원 : **32억원(2년간)**

※ 출·퇴근 시간 통행차량 중 창원시 등록차량 비율 63%

- 지원기간 : ‘26. 7. 1. ~ ‘28. 6. 30.(2년간, 민선9기 공약 감안)
- 지원방법 : 경남도에서 분기별 재정지원액 산정(증빙첨부)하여 우리시에 통보
- 지원금액(추정) : 32억원(연평균 16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총 액	재정부담금		
		'26년 하반기	'27년	'28년 상반기
출퇴근할인	64	16	32	16
창원시(50%)	32	8	16	8
경남도(50%)	32	8	16	8

※ 지원금액은 추정금액으로 향후 실제 통행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향후 추진계획

○ 재정지원 업무협약 체결 (창원시 ↔ 경남도) : ‘26. 9월

6.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별첨> 1. 출·퇴근 시간 할인에 따른 재정지원 산출근거

2. 업무협약서(안)

별첨 출·퇴근 시간 할인에 따른 재정지원 산출근거

【참고 1】 마창대교 연간 교통량(최근 3년) (단위 : 대)

연 도	합 계	경 차	소형차	중 형	대 형	특대형
2023년	**16,577,536**	1,373,445	13,944,456	206,034	401,795	651,806
2024년	**17,474,461**	1,450,547	14,657,802	212,324	446,447	707,341
2025년	**17,802,696**	1,430,422	14,962,056	206,912	442,386	760,920

【참고 2】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실제 통행량 (단위 : 대)

구 분	평일 4시간 (07 ~ 09시, 17시 ~ 19시)				
	합 계	'25년 2분기	'25년 3분기	'25년 4분기	'26년 1분기
합 계	**3,716,401**	**930,224**	**960,231**	**936,212**	**889,734**
소 형	3,427,259	858,080	890,382	861,147	817,650
중 형	41,175	10,368	10,546	10,526	9,735
대 형	96,931	26,133	24,395	24,213	22,190
특 대 형	151,036	35,643	34,908	40,326	40,159

【참고 3】 재정소요액 추산 (※통행량 10% 증가 가정)

구 분	할인액(A)	통행량(B) (대)	**출퇴근 32% 할인 연간** 재정지원금 (백만원)		
			소계 (C)A×B	재정지원금 (D)=C÷1.1	부가세 (E)=D×0.1
소계	-	4,088,041	3.423	**3,112**	311
소형	800원	3,769,985	3.015	2,742	274
중형	900원	45,293	41	37	3
대형	1,100원	106,624	117	107	11
특대형	1,500원	166,140	249	227	23

(단위 : 억원)

구 분	총 액	**2년간** 재정부담금		
		'26년 하반기	'27년	'28년 상반기
출퇴근 할인(32%) 50%분담	**32**	**8**	**16**	**8**

별첨 **업무협약서(안)**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을 위한 경상남도-창원시 업무협약서(안)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마창대교 평일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시행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협약은 마창대교 출퇴근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교통편의 제고를 위하여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사항)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한다.

1. **기간은 2028. 6. 30.까지로 한다.**
2.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는 출퇴근 시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7:00~09:00, 17:00~19:00까지 4시간으로 한다.
3. 출퇴근 시간에 마창대교 영업소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징수 **통행료의 32%를 할인한 통행료를 적용**한다.
4. **통행료 할인에 따른 통행료 수입 감소 손실은 경상남도가 50%, 창원시가 50% 비율로 분담하여 재정지원한다.**(단, 협약 종료 이전에 발생한 재정지원금 지급의무는 협약이 종료되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5.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자((주)마창대교)가 분기별로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에 청구하면, 경상남도는 이를 검토 후 확정한 금액에서 창원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금을 통보하고,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기한 내에 각각 해당 금액을 처분승인대상통행료수입계좌(예금주: ㈜마창대교)에 납입한다.

7. 예산사정 등으로 재정지원금을 기한 내 부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사항을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하며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상호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한다.
8.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마창대교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업무협약서 체결 이후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지속한다.**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본 협약 체결 후 각 기관의 명칭,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제4조 (비밀유지)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다.

제5조 (협약의 변경)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제2조에 따른 협약사항 이행과정에서 정책 여건의 변화 등 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의를 통해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 체결 시부터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유효하다.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기간 만료 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기 타)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